



안전관리

불법 구조변경 LPG차량 단속 계획

가스안전공사는 행정관청과 합동으로
불법 구조변경 LPG차량을 단속하라는
산자부의 지시에 따라 최근 합동단속계획을
우리회로 알려왔다.



1. 배경

- 최근의 고유가로 인하여 휘발유차량을 LPG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, 산업자원부로부터 행정관청과 우리공사가 합동으로 불법 구조변경 LPG차량을 단속하라는 지시가 있어, 세부 단속계획을 수립, 시행코자 함.

2. 기본방침

- 단속은 행정관청(시·군·구)과 우리공사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, 실시(필요시 경찰관서에 협조요청)
- 불법 구조변경 차량 단속과 병행하여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단속 실시
- 단속을 실시하기 전 언론매체,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불법 구조변경 LPG차량의 불법성·위험성 및 처벌조항 등을 집중 홍보

3. 세부 추진계획

- 단속기간 및 시기
 - 기간: 200.5월말~12월 말까지
 - 시기: 매분기 1회 이상, 1개 충전소당 1일간(불특정일)씩 실시
 - 대상: 전국의 모든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실시
- 단속반 편성
 - 행정관청(시·군·구)1명, 우리공사 지역본부(지사)1명으로 합동단속반 편성
 - ※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능한 한 행정관청을 통하여 경찰서와 합동 단속 추진
- 현수막, 언론매체 등을 통한 집중 홍보로 단속효과 제고
 - 충전소에 불법 구조변경 단속 현수막 게

시(5월 중): 충전소에 협조요청

※ 엘피 620-1032호(2000.3.17)에 의하여 기 게시 중인 충전소는 제외

〈현수막 표준문안〉

우리 충전소에서는 불법 구조변경한 LPG차량에 충전을 하지 않습니다.

- 불법 구조변경 및 완성검사 미필 행위: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▶ 단속기간: 2000.5.1~12.31

- 규격: 가로7m×세로80cm 이상

- 색상: “불법 구조변경”→적색, 기타글씨→흑색

○ 중앙일간지, 전문지 등 언론매체를 통한 단속계획 홍보(5월 중)

○ 지방방송, 지방신문, CA-TV, 반상회보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본 단속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(5월 중)

※ 반드시 5월 반상회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할 것

□ 단속방법 및 조치

○ LPG자동차 충전소에서 영업용을 제외한 모든 LPG차량(승용차)에 대하여 LPG자동차 용기부분 또는 충전구 부분에 완성검사필증 부착 여부 및 교육 이수 여부 확인

- 완성검사필증 미부착 차량은 차량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여 최초부터 LPG차량으로 출고되었는지, 또는 행정관청의 구조변경승인 및 최종 구조변경검사(교통안전공단)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

※ 교통안전공단의 최종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차량은 우리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은 차량임.

- 완성검사 필증 미부착 차량이 차량등록증을 미제시할 경우의 조치

- 차량등록증 제시를 요구해도 거절하는 경우에는 차량번호 기재 후 자동차등록사업소 등에 차적을 조회하여 불법 구조변경 여부 확인
 - 교육 미이수자는 주소 및 인적사항을 확인
 - 불법 구조변경 차량 색출시의 조치(현장 색출시)
 -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(번호판 및 용기 부분)하여 증거물을 확보
 - 차량 소유주의 주소·성명 등 인적사항 확인(차량등록증)
 - ※ 사후에 차적조회를 통하여 불법 구조변경 차량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행정관청에 처분 의뢰(타 지역 차량의 경우에는 지역본부·지사간 협조)
 -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조치
 - 1차:안내문 및 교육신청용 지로용지를 현장에서 배부
 - 2차:지정된 기일 내에 교육 미신청시에는 행정관청에 처분 의뢰(타 지역 운전자의 경우는 지역본부·지사간 협조)
 - 불법 구조변경 LPG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(행정관청)
 - 1차:LPG 사용금지(액법 제29조 제5항) 및 시설철거 명령
(현장에서 우선 구두통보 후 추후 공문에 의한 시정명령)
 - ▶ 기일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내린 후 시정조치가 완료되면 관할 행정관청의 확인을 받도록 함.(타지역 차량의 경우에는 행정관청간 협조요청)
 - 2차:지정된 기일 내에 시설 미철거시에는 과태료 처분, 고발 등의 조치
- 〈처벌근거〉
- 불법구조변경 행위 : 1년 이하 징역 또는

300만원 이하의 벌금(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)

- 불법으로 LPG연료 사용행위 : 300만원 이하의 벌금(액법 제47조 제9호)
- 구조 변경 후 미검사 행위 :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(액법 제48조 제 2항 제5호)

LPG차량 불법 구조변경 및 연료사용제한 관련 법조문

1 자동차관리법

- 법 제34조(자동차의 구조·장치의 변경)
 - 자동차의 구조·장치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- ▶ 위반시 벌칙: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(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)
- 시행규칙 제55조(구조·장치의 변경승인대상 및 승인기준)
 - ① 법 제34조에서 “자동차의 구조·장치 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것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조·장치를 말한다.
 1. 영 제8조 제1항 제1호(범퍼·라디에이터그릴 등 경미한 외관변경의 경우를 제외한다) 및 제3호의 사항과 관련한 자동차의 구조)
 2. 영 제8조 제2항 제1호·제2호(차축에 한한다)·제4호·제5호·제7호(연료장치에 한한다)내지 제10호·제12호·내지 제14호·제20호 및 제21호의 장치
 - ▶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는 연료장치가 포함되므로 “취합

유→LPG로 연료장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변경승인 대상이 됨

2.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

가. LPG 연료사용 제한 규정

- 법 제34조의3(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) 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의 적정한 수급, 사용상의 안전관리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.

▶ 위반시 벌칙 : 300만원 이하의 벌금(법 제17조 제9호)

- 시행규칙 제56조의 2(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)

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 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.

1.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
2.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합자동차·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. 다만, 화물자동차 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의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.
3.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유·사용하는 관용 승용자동차. 다만, 웨곤형 및 쥘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.
4.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가 유공자(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

에 한한다) 또는 당해 국가 유공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(배우자,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,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·자매를 포함한다)가 소유·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

5. 장애인 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당해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(배우자,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,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·자매를 포함한다)가 소유·사용하는 승용자동차 중 1대

나. 구조변경 후 미검사 차량에 대한 처벌규정

- 법 제29조(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·검사 등)

②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한 자(이하 “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”라 한다)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, 정기적으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▶ 위반시 벌칙 :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(법 제48조 제2항 제5호)

- 시행규칙 제49조(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등)

○ 제1항 제3호 :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 중 “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”가 포함

▶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검사권한을 위탁